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3. 10. 16.] [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-9호, 2023. 10. 16., 일부개정]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조사총괄과), 02-2100-316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3조제5항에 따라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"보호위원회"라 한다)가 법 제34조, 제62조, 제63조, 제63조의2 및 제68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 40조, 제60조 및 제62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신용정보법"이라 한다)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(이하 "조사등"이라 한다)의 절차와 방법,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조사관"이란 법, 신용정보법(이하 "개인정보 보호 법령"이라 한다)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- 2. "위반행위"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, 제28조의8, 제28조의9,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, 제31조부터 제35조의 3까지,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
 - 나. 신용정보법 제15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의2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, 제36조, 제37조, 제38조, 제38조의 3, 제39조의4, 제40조의2 및 제42조
- 3. "조사대상자"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조사등을 받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(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(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- **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**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, 「행정절차법」,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조사

제1절 조사의 사전검토 등

제4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) ①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 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신고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2. 피신고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3. 위반행위의 내용
-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신고의 경험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- **제4조의2(자진신고)**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반행위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자진신고할 수 있다.
- 제5조(사전검토 등) ① 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른 소관 국(이하 "해당 국"이라고 한다)의 국장(이하 "해당 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.
 - 1. 제4조 등에 따른 신고(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유출 등의 신고(이하 "유출 신고"라 한다), 법 제62조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, 제4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(이하 "자진신고"라 한다), 민원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, 다른 기관이 이첩한 신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접수한 경우
 - 2.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② 조사관은 제4조 등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장에게 조사착수 여부의 보고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조사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
- **제5조의2(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)**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 - 2.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(조사대상자와 위반행위가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)인 경우
 - 4. 개인정보 보호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
 - 5.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
 - 6. 피신고인에게 사망,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

제2절 조사의 절차 및 방법

- 제6조(조사의 착수) 해당 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, 조사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조의2(사건의 등록 및 관리) ① 조사관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고, 사건번호 및 사건의 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.
 - 1. 조사 착수연도
 - 2. 사건별 부호문자
 - 3. 접수일련번호
 - ③ 사건번호는 조사대상자, 위반행위의 동일성, 조사대상이 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다.
 - ④ 사건의 명칭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한다.
 - ⑤ 사건은 계류 현황, 처리 완료 현황 및 지연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7조(조사기간) ①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. 다만,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 한다.
 - ②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(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) 이내에 제 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의2(조사대상)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대표자, 임직원,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8조(조사의 범위) 조사관은 제9조,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"조사공문"이라 한다)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2(사건의 분리 및 병합) ① 해당 국장은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.
 - ② 사건을 병합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조사기간이 가장 늦은 사건의 조사기간을 따르고, 사건을 분리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각 사건의 원래 조사기간을 따른다.
- 제8조의3(조사의 중지 등) ①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조사가 재개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1. 조사대상자의 부도, 휴업, 폐업, 도피, 소재불명, 연락두절 등의 경우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의 결과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
- 3.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
-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해당 국장은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의2제 1항에 따른 조사종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관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"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"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자료제출 요구)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으로 한다.
 - 1. 제출요청사유
 - 2. 자료를 제출할 자
 - 3. 제출할 서류, 물건 등 자료
 - 4. 제출기한과 장소
 - 5. 제출방식
 - 6.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
- 제10조(현장조사)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(이하 "사무소등"이라 한다)에 출입하여 그 대표자, 대리인, 그 밖의 임직원 등(이하 "관계인"이라 한다)에게 진술을 요구하 거나 관계인을 참관시킨 후 업무 상황, 장부・서류,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, 해당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할 수 있다.
 - 1. 조사목적
 - 2. 조사기간
 - 3. 조사내용
 - 4. 협조사항
 - 5.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소관 법률상의 제재 내용
 - 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
 - 7. 조사단계에서 조사대상자가 보호위원회 또는 조사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증 및 조사공문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④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장소, 조사기간, 조사내용, 제출한 자료나 물건의 목록,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열람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, 관계인과 함께 해당 현장조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. 다만,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⑥ 조사관은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사무소등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, 관계인과 함께 해당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. 다만, 관계 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⑦ 조사관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보호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출석·진술 요구)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.
 - 1. 출석요구의 취지
 - 2. 출석 대상자
 - 3. 출석일시 및 장소
 - 4.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
 - 5. 제출자료
- 제11조의2(조사 과정의 녹음・녹화)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. 이 경우 녹음・녹화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공동조사 등) ① 보호위원회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 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.
- 제12조의2(제출기한의 연장 등) 조사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(제16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기한의 연장 및 현장조사, 출석 일시 등의 변경(이하 "제출기한의 연장 등"이라 한다)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해당 조사 등을 개시하기 전에 제출기한의 연장 등의 사유 및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, 보호위원회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의 연장 등을 허용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3조(변호인의 참여) ①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- 2. 조사관의 승인 없이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
 - 3. 조사대상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
 - 4. 신문내용을 촬영, 녹음, 기록하는 경우. 다만,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
 - 5. 그 밖에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.
- 제14조(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) ① 조사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제9조, 제10조,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관련 사건의 조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 ①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조사배경
 - 2. 조사대상 및 기간
 - 3. 조사경과
 - 4. 위법사실 및 시정조치 등 처리 의견
 - 5. 관계 법령 등 참고 사항
 -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② 해당 국장은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,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관은 최초 결과보고와 조사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수정보고할 수 있다.
- 제15조의2(조사종결 등) ①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 - 1.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제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조사대상자에게 사망,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조사대상자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 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
- ② 해당 국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.
- 제15조의3(사건의 전결) 해당 국장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·반복되는 사건으로서 위원장이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.
 - 1.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
 - 2.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
- 제15조의4(종결 및 전결의 통지) ① 보호위원회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거나 제15조의3에 따라 전결한 경우에는 종결 또는 전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신고인 (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사건으로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절 시정조치안의 작성

- 제16조(사전통지 등) ① 조사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제18조제2항 각 호의 시정조치(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고발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"처분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(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"당사자"라 한다)에게 통지하고,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, 주소
 - 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
 - 3.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
 - 3의2.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
 - 4. 보호위원회의 명칭과 주소(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)
 - 5. 의견제출 기한
 - 6. 증거자료 목록
 - 7. 사무처의 조치의견은 보호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
 - 8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② 조사관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한 이후 보완조사 등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등이 달라지는 경우(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이 완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6조의2(의견제출 등) ①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조사관은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 - 1.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
 - 2. 당사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로서 조사관이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한 문서에 당사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
 - ③ 당사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에 과징금의 부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, 매출액 산정자료 등 매출액 입증자료(이하 "입증자료"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⑤ 당사자는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」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7조(증거자료 열람·복사 등) ①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보호위원회에 열람·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 - 1. 영업비밀 보호
 - 2. 사생활의 비밀 보호
 - 3. 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
 - 4. 기타 공익상 열람 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8조(시정조치안의 작성) ① 해당 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시정조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, 구체적 내용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 - 1.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(이하 "시정조치 명령"이라한다),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(이하 이 장에서 "시정권고"라 한다)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법 제64조의2 및 신용정보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
- 3. 법 제75조 및 신용정보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- 4. 법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
- 5.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
- 6.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
- 제18조의2(재조사 등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.
 - 1. 조사결과 또는 시정조치안에 사실의 오인,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
 - 2.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이 있은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

제4절 시정조치안의 심의 • 의결 및 이행점검

- 제19조(시정조치안의 심의·의결) ① 해당 국장은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시정조치안을 보호위원회에 심의·의결안 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유사·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 태료의 부과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법 제7조의12에 따른 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가 심의·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
 - ② 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,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0조(시정조치 명령 등) 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또는 침해 상태의 해소를 위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 또는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권고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경고)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수 있다.
 - 1.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
 - 2.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
 - 3.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
- 제22조(사건종결)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.
 - 피심인에게 사망,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피심인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
- 제23조(주의촉구)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.
- 제24조(심의중지) ① 보호위원회는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"조사"는 "심의"로, "조사대상자"는 "피심인"으로 본다.
 -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한다.
 - ③ 보호위원회는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서에 "피심인에게 영업 재개 등의 심의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"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24조의2(심의의 분리·병합 및 재개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심의 절차의 분리·병합 및 그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.
- 제25조(의결서의 작성) ① 보호위원회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안건번호 및 안건명
 - 2. 피심인
 - 3. 의결연월일
 - 4. 주문
 - 5. 이유
 - 6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 - ② 보호위원회는 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」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.
 - 1.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명하는 사건
 - 2. 제21조에 따른 경고를 명하는 사건
 - 3.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
 - 4. 제23조에 따른 주의촉구를 하는 사건
 - 5.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건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 - ④ 보호위원회는 둘 이상의 안건을 하나의 의결서로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피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피심인의 영업비밀, 사생활의 비밀,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5조의2(의결서의 통지) ① 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지체 없이 그 정본(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, 내용을 말한다)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, 신고인(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으로서 피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③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시정조치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제25조의3(의결서의 공개) 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의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」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비식별화조치 등을 하고 공개할 수 있다.
- 제26조(공표시기)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당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발송한 날에 공표한다. 다만,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27조(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) ① 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, 시정권고 또는 공표명령(이하 이 조에서 "시정명령 등"이라 한다)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- ② 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이행완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완료 기한이 경과하기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,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의 이행 기한 내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수 있다.
 - ③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(6월, 12월)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7조의2(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통보 여부의 확인) ① 피심인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(이하 이 조에서 "개선권고등"이라 한다)의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- ② 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 통보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,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 내에 개선권고등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.
 - ③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(6월, 12월)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절 이의제기 등

- 제28조(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) ① 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)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「행정심판법」 및 「행정소송법」을 따른다.
- 제29조(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) ① 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「질 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 기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, 관할 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당사자는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.
 -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「 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제3장 사전 실태점검

- 제30조(사전 실태점검의 착수 등) ① 해당 국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담 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, 사전 실태점검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사전 실태점검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은 사전 실태점검의 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.
- 제30조의2(합동 사전 실태점검)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 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- 제30조의3(시정권고안의 작성) ① 해당 국장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30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제 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권고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시정권고안은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포함하되, 구체적 내용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시정권고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제30조의4(시정권고)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방안(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의 해당 권고의 이행 기간을 포함한다)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30조의5(의결서의 작성) 보호위원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시정권고(이하 이 장에서 "시정권고"라 한다)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안건번호 및 안건명
 - 2. 피심인
 - 3. 의결연월일
 - 4. 주문(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)
 - 5. 이유
 - 6. 지정된 기일까지 피심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사실
 - 7.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수 있다는 사실
 - 8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- 제30조의6(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) ①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은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.
 - ② 전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피심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제30조의7(시정권고 이행 여부의 확인 등) 피심인은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- 제30조의8(시정권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검사) 보호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 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제 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0조의9(조사 규정의 준용)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,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,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,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, 제18조의2, 제19조,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조사"는 "사전 실태점검"으로, "처분", "시정조치", "시정명령등"은 각각 "시정권고"로 본다.

제4장 업무의 위탁 등

- 제31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보호위원회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 된 접수 및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.
 - 1.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(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로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
-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한 사건
- 2.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
- 3. 특정 분야에 속한 다수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사건
- 4. 조사착수 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정하여지는 등 조사내용이 복잡한 사건
- 5.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사건
- 6. 공동조사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건
- 제31조의2(조사의 착수 등) ① 전문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.
 - ③ 전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착수 여부의 결정을 마쳐야 한다. 다만,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31조의3(조사기간) ①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.
 - ② 전문기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31조의4에 따른 조사결과 자료 송부를 마쳐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기간을 정하여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31조의4(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) ① 전문기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②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,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보완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31조의5(조사종결 등) ① 전문기관은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.
- 제31조의6(사건의 전결)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·반복되는 사건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.
 - 1.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
 - 2.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31조의7(결과 보고) 전문기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1조의8(조사 규정의 준용)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제3항, 제5조의2, 제6조의2,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, 제12조의2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호위원회", "해당 국장" 또는 "조사관"은 각각 "전문기관"으로 본다.

제5장 보칙

- 제32조(세부사항 시행) ①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기관은 관계 법령, 행정규칙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제33조(재검토 기한) 보호위원회는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3-9호,2023.10.16.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- **제3조**(기간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사건부터 적용한다.
 - 제4조(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